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부여〉

■ 배준영 · 모경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2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참고 1] 인천광역시 신설 자치구 관할구역 및 설치 기대효과	12
[참고 2]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 지도	14
[참고 3]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선정항목 및 교부기준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배준영·모경종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7.
3. 회부연월일 : 2024. 8.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구는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인천과 유사한 형태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군·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 17호의2·제19호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군·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신설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해당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 및 제19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17의2. “지방자치단체의 <u>신설</u> ”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신설></u>	18. (현행과 같음) 19. “ <u>신설 지방자치단체</u> ”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관 <u>통합</u>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2관 <u>통합·신설</u>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
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
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
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
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
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
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
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
-----통합 및 신설(이하 “통합
등”이라 한다)으로-----

-----.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
장) ① -----통합등
으로-----

-----.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신설 지
방자치단체(이하 “통합지방자치
단체(신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
당 지역을 관할하는 종전의 지방자
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통합등에-
-----범위
에서 통합등의-----
-----통합지방자치
단체등에-----.

② -----통합
등에-----

-----통합지방자치단체
등에-----.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

③ 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

-----.

제51조(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특별 지원) ① -----

-----통합지방자치
단체등에-----

-----.

② -----

-----통합지방자
치단체등-----

-----.

③ -----

-----통합지방자치단체등-----
-----.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

-----통합지방자
치단체등이-----

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의-----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이-----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의-----

-----.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재정 지원) -----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이-----

-----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
-----.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은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이-----

-----.

현행법¹⁾은 시·군·구 중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특례〉

관련 조문	특례 내용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 통합에 따라 종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의 상실 또는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은 정원 외로 인정 - 폐지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 국가가 통합에 직접사용된 비용 지원 가능 - 통합으로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 지원 가능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 -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우선 지정 - 각종 시책사업 등 시행 시 우선지원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정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
제55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장 1명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증가성이 반영되도록 정함
제5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 운임·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을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름

※ 개정안에 따르면,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의 특례가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됨

반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군·구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새로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특례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특별교부세²⁾ 등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함³⁾.

특히, 2026. 7. 1. 시행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가 신설될 예정인데, 신설되는 자치구는 신청사 건립 및 정보 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⁴⁾.

2)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3)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선정항목 및 교부기준은 p.15 [참고 4]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선정항목 및 교부기준에 기재함
- 4) 다만, 자치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청사관리비 등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일반 행정비)에 반영되므로, 해당 재정수요는 보통교부세로 충당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교부세 교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을 것임.

※ 보통교부세 교부액: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의 전제

- 자치구 설치에 따라 **현재 추계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작성
 - ※ 인건비, 청사비 등은 신설되는 자치구에서 기구·정원 규모, 청사 건립·운영방안 등이 결정된 후 산출 가능하므로 추계 불가
- **과거 자치단체 폐지분할 사례**에 인구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

□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 총 10,147백만원
 - ※ 강원특별자치도('23.), 現 자치구 시스템 운영비 등 참고
 - (중·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총 2,402백만원
 - ※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기존시스템 활용 / 1,328백만원) + 정보·통신실 이전·구축(1,074백만원)
 - (서구 → 서구·검단구) 총 7,745백만원
 -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신규 구축(검단구 신규 구축 / 4,851백만원) + 정보·통신실 이전·구축(2,894백만원)
- **공인·공부 정비** : 총 266백만원
 - (공인정비) 214백만원
 - (공부정리) 52백만원
 - ※ 미추홀구 명칭변경('18.) 시 공인·공부 정비비용 기준 물가상승률 및 인구·행정동수 반영하여 산출

□ 비용추계 결과

- 자치구 설치에 따라 5년간 총 10,413백만원(연평균 2,082백만원) 소요 예상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10,147	-	-	-	-	10,147	2,029
공인·공부 정비	266	-	-	-	-	266	53
소 계(A)	10,413	-	-	-	-	10,413	2,082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와 같이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⁵⁾.

5) 참고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음.

다만,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신설 및 통합의 목적, 효과, 추진현황 등을 비교·검토하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재원의 충당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을 시·군·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 중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경우는 동일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는 시·군·구 통합의 촉진을 위하여 시·군·구 통합절차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별도의 절차규정 없이 신설 지방자치단체에게 통합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법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관한 정부의 입장>

모경총의원: 분구의 경우에 통합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중략)...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의 경우에는 이제 지원 근거가 있는데 분구의 경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합 근거를 가지고 분구를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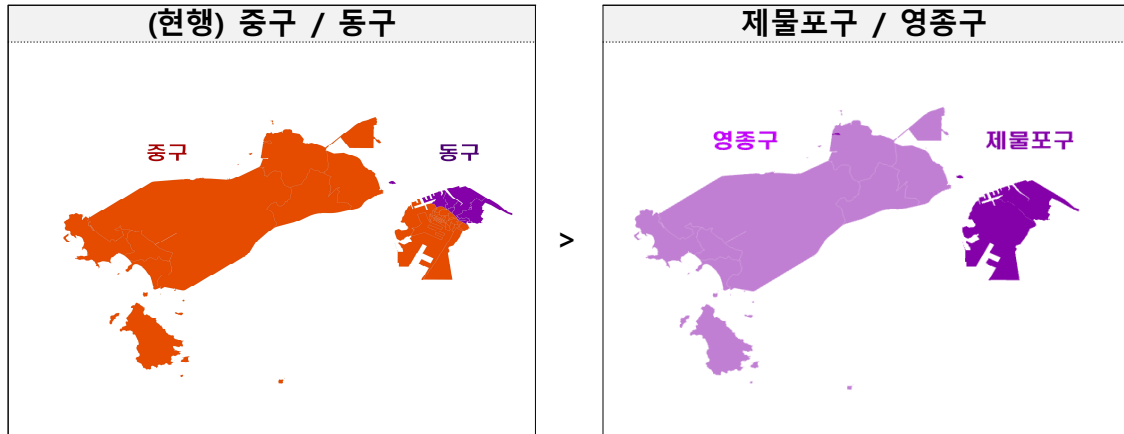
※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2024. 10. 7) 회의록 p.195

문 의 처

02)6788-5334

[참고 1] 인천광역시 신설 자치구 관할구역 및 설치 기대효과

<영종도구 및 제물포구 관할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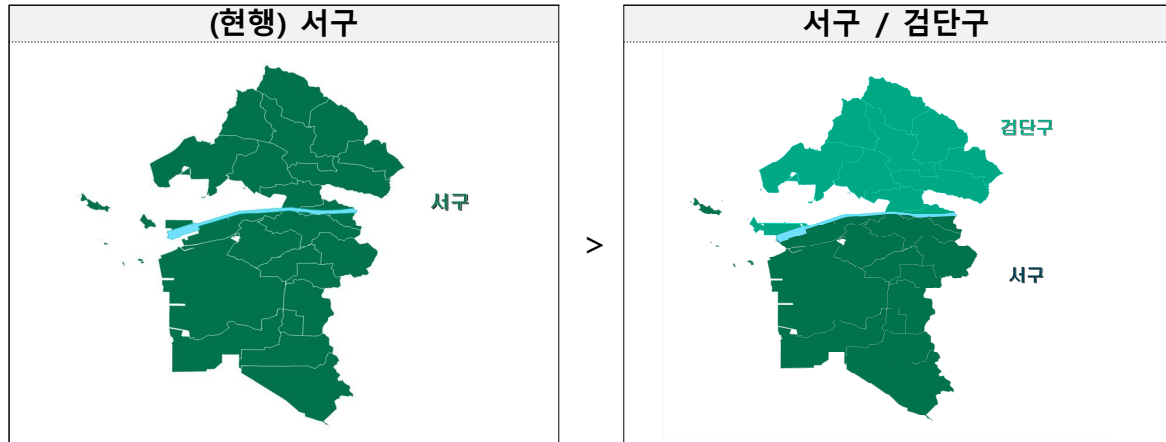
※자료: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영종도구 및 제물포구 설치 기대효과>

구 분	현행		제물포구	영종구
	중구	동구		
인구*(명)	155,310	59,636	102,971	111,975
인구증가율(%) (전년대비)	6.47	△4.04	△2.92	9.98
면적(km ²)	140.37	7.2	21.74	125.83
행정동/법정동 (개)	11/52	11/7	18/51	4/8
자체수입 (백만원)	188,399	42,043	89,160	141,282
세출규모 (백만원)	538,113	361,895	579,624	320,384
관할지역	중구 일대	동구 일대	[중구] 신포,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 개항 [동구] 만석 화수1·화평, 화수2, 송현1·2, 송현3, 송림1, 송림2, 송림3·5, 송림4, 송림6, 금창	영종, 영종1, 운서, 용유

※자료: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서구 및 검단구 관할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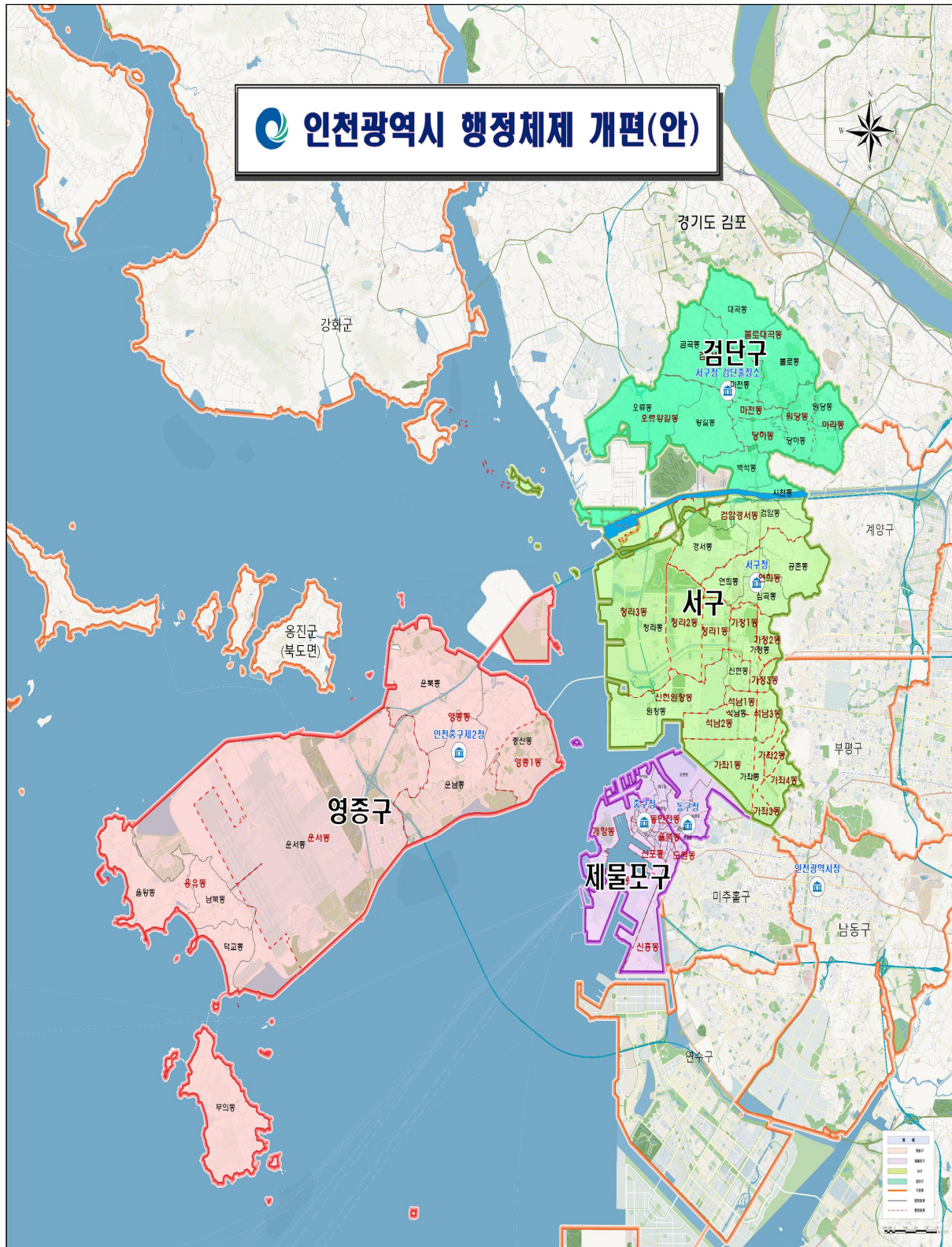
※자료: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검단구 설치 기대효과>

구분	현행	서구	검단구
	서구		
인구	600,578	391,302	209,276
인구증가율(%) (전년대비)	1.6	1.0	2.9
면적(km ²)	118.49	70.80	47.69
행정동/법정동 (개)	23/21	16/11	7/10
자체수입 (백만원)	326,697	237,163	89,534
세출규모 (백만원)	1,237,218	718,539	518,679
관할지역	서구 일대	(16개동) 검암경서, 연희, 청라1, 청라2, 청라3, 가정1, 가정2, 가정3, 신현원창, 석남1, 석남2, 석남3, 가좌1, 가좌2, 가좌3, 가좌4	(7개동) 검단, 불로대곡, 원당, 당하, 오류왕길, 마전, 아라 ※'25년 아래1·2동 분동 예정

※자료: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참고 2]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 지도



[참고 3]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선정항목 및 교부기준

교부대상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1.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도로·교통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도로·교통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주거환경 개선, 도로 정비 등 도로 관련 사업 ②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 정비 등 교통 관련 사업
	나. 상하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상수도·하수도·간이상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비상 급수, 고지대 급수 등 상수도 설치사업 ② 하수도 설치사업 ③ 하천의 개수(改修)·복개(覆蓋) 등 하천 관리사업
	다. 사회복지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등 관련 각종 사회복지사업 ② 보건소시설 기능 보강 등 보건위생사업
	라. 농업·수산업진흥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농업·수산 진흥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관련 시설사업 등 농업진흥사업 ② 수산물 저장·유통 및 선착장 등 수산진흥사업
	마.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②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및 추진하는 도시개발·환경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 및 택지개발 연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② 환경오염 방지,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사업
	사. 그 밖의 주요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사업의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법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교부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통시장 활성화, 읍·면 중심지 주차장 조성 사업 ②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③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나. 주민생활안정 시책	[교부기준] 주민생활안정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②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③ 그 밖의 주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다. 지방행정기능 강화 시책	[교부기준] 지방행정기능 강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② 상수도 관리 효율화 사업 ③ 그 밖의 지방행정기능강화 사업
	라. 행정구역 개편 수요	[교부기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전산망 등의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자치구 수 × 10억원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신설 시당 15억원

	마. 국가 행사 관련 시책	[교부기준]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개수·보수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국체전, 소년·장애인 체전 ② 국가 유치 국제체육대회 ③ 그 밖의 국가적 주요 행사 등
	바. 우수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1) 정부합동평가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결과 행정혁신·대민서비스 혁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 분야] ① 행정혁신 ② 대민서비스 혁신 ③ 보건복지 ④ 환경관리 ⑤ 지역경제 ⑥ 지역개발 ⑦ 문화관광 ⑧ 안전관리 ⑨ 그 밖의 분야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2) 분쟁해결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상호 간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다툼현상 등을 극복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3) 행정·재정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보화·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환경·민원 서비스·안전관리 분야 등의 업무 추진 또는 지방재정운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4) 그 밖에 주요 우수 정책사업 지원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우수 사례로서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큰 경우와 지방 재정 보전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사업비 소요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사. 그 밖의 주요 시책	[교부기준]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